

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

「축산법 시행령」의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 사유

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「축산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「축산법 시행령」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지정 시 자격기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몰도래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국무조정실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강화 등 없음

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「축산법 시행령」의 일부개정령안

제1조(「축산법 시행령」의 개정)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3호 중 “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”을 “축산기사나 축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가축 육종·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축개량총괄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) 「축산법 시행령」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축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) ① (생략)	제11조(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과 개량업무 처리를 위한 시설·장비를 갖추고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종류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2. (생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<u>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</u>	3. ----- <u>축산기사나 축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가축 육종·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u>